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칙 제4조에 의거하여 한양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두는 대학원의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목적·목표) <전문개정 2014.12.19>

- ① 본 대학원은 근면, 정직, 겸손, 봉사의 덕목을 갖춘 인재양성을 지향하는 한양학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교육이념으로 삼는다.
- ② 본 대학원은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목적과 본 대학원의 교육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열린 고등교육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창의적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③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근면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교양인을 기른다.
 2. 전공분야의 심오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을 기른다.
 3.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사회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인을 기른다.
 4. 문화적 다원성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세계인을 기른다.
 5.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는 봉사인을 기른다.

제3조(과정)

- ①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 ② 본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4조(대학원 종류)

본 대학원에는 미래융합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교육정보대학원, 디자인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1.12.01, 신설 2020.9.2.>

제5조(전공 및 입학정원)

-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 <개정 2013.12.24>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 <개정 2013.12.24>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6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재입학 및 편입학, 정원 외 입학을 포함하여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7조(입학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8조(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소정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

-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학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11조(등록)

-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7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3조(편입학 및 재입학)

-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재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4조(휴학)

- ① 휴학은 입대휴학, 가사휴학 및 병가휴학(질병)으로 구분한다.
- ② 질병(병가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사휴학)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휴학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해외근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횟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11.07.14, 2014.12.19>
- ④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질병, 출산, 해외근무, 천재지변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7.14>

제15조(복학/연장)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연장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전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회(1학기)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속하여 휴학을 연장할 수 없다.

제16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한다.

1.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 처분을 받은 자

제4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수업 및 학점

제18조(수업연한)

- ① 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1. 학기당 기준학점 초과취득자
 2. 교류협정 등 특수한 경우

제19조(수업일수)

- ① 매 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제20조(학년도 · 학기)

- ①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단, 학사 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계절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구정, 추석 등 명절과 각종 국경일
 4. 개교기념일
- ② 총장은 입학식, 졸업식, 비정기 시스템점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업방법)

-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원격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수업진행의 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 및 과제물지도 등을 병행 할 수 있다.
- ② 원격수업의 충실한 진행을 위한 질 관리는 원격교육의 기획, 개발, 운영, 평가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 평가하며, 그 평가 결과를 재반영한다.
- ③ 대학원 수준의 교육적 질을 원격수업에서도 유지하기 위하여 학습지원 및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교를 둔다.

제23조(교육과정)

- 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단, 대학원장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학부에서 수강할 수 있다.
- ②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③ 교육과정 중 하나로 필요에 따라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이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교과목 구분)

교과목 구분은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25조(선수과목)

- ① 학부 전공 또는 부전공이 대학원의 전공과 다른 경우 전공 특성에 따라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선수과목의 이수는 학기당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수료학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부과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보충과목)

- ① 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사과정 교과목은 보충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충과목의 이수는 학기당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수료학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학기당 취득학점)

-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과목, 보충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 ③ 과락 과목이 있을 경우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 ④ 최종학기의 논문 또는 기타 논문 대체 학점은 제1항의 기준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08.14]

제28조(타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시험 및 성적

제29조(시험)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별도로 부과하는 과제의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제30조(특수연구보고서)

본 대학원 학생에게는 학기 중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성적평가)

- ① 성적은 학습시간 및 출석, 시험성적, 과제평가, 토론 및 세미나 참여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F	69점 이하	0

②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점 없이 P(합격) 또는 F(불합격)만으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

제32조(성적인정)

각 교과목의 성적은 C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각 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B등급이상이여야 한다.

제33조(출석성적)

- ① 출석일이 부족한자의 교과목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교과목 성적을 인정할 수 있는, 해당학기 수업의 출석일 계산은 강의일수의 4분의 30이상 출석으로 한다.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34조(수료)

- ①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②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5조(수료학점)

본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이상으로 한다.

제36조(학위수여 요건)

- ① 각 전공에서 수료 학점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 및 석사학위청구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9.08.30>
- ② <삭제 2019.08.30>
-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6조의 2(조기학위 수여)

제36조의 2(조기학위 수여) 조건을 4학기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조기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01

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자격시험)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12.01., 2019.08.30., 2021.12.27>

제38조(논문·학술지 제출) <제목개정 2019.08.30>

학위논문과정 또는 학위논문대체전문학술지과정에 있는 자가 학위논문 또는 전문학술지기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08.30>

제39조(학위논문·전문학술지기재논문 심사) <제목개정 2019.08.30>

학위논문 또는 전문학술지기재논문 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는 교내·외 전공(학과) 또는 유관전공(학과) 교수 또는 관련 분야 권위자 중에서 3인(지도교수 포함)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08.30>

제40조(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정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별표 1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전문분야를 표기하여 수여하며, 학위기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1조(학위수여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장학금, 학생활동 및 지도

제42조(학생지도)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및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4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교 위상을 드높인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징계)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징계 할 수 있다.

제46조(학생회)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제47조(공개강좌)

- ① 학위과정 외에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8조(연구과정)

-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과정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연구과정생의 이수학점은 본 대학원 학위과정생에 준하여 관리한다.
- ④ 연구과정생이 본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연구과정의 이수학점을 9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대학원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⑥ 연구과정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9조(직제)

본 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교수구성)

- ① 본 대학원에 각 전공별로 1명의 주임교수를 둔다.
- ② 주임교수는 그 전공분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학생의 이수과목 지정 및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 ③ 각 전공에는 개별학생의 학사지도·연구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지도교수를 둔다.

제51조(대학원위원회)

- ①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2조(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53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발의 또는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장 자체평가

제54조(자체평가)

- ① 대학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학칙 개정

제55조(학칙의 개정)

- ① 대학원장은 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정업무 주관 부서로 심의 요청한다.
- ② 학칙 개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교 제규정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2장 보칙

제56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5조 별표1에 따른 호텔관광 MBA 명칭 변경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전공명칭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 중인 학생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호텔관광외식 MBA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입학자는 변경 전 전공명으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MBA, 디자인기획전략에 재적 중인 학생은 미디어 MBA, 디자인기획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입학자는 변경 전 전공명으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이전 호텔관광외식 MBA, 심리상담에 재적 중인 학생은 외식프랜차이즈 MBA, 상담 및 임상심리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입학자는 변경 전 전공명으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경영대학원 MBA, 경영대학원 그린텍 MBA에 재적 중이 학생은 폐지 전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일 계열 대학원 내에서 전공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변경 후 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9.05.08>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08.30)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학위논문대체전문학술지제재논문 인정은 2019년 9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영대학원 외식프랜차이즈MBA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대학원 외식프랜차이즈MBA에 재적중인 학생은 2024년 2월 말 일 까지는 동 대학원의 재학생으로 보며, 2024년 3월 1일부터는 동일 계열 대학원 내 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한다.

② 동일 계열 대학원 내 전공으로 학적변경을 할 경우, 변경 전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변경 후 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입학 당시 전공명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3) (디자인대학원 전공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디자인기획, 디자인융합에 재적중인 학생은 디자인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입학 당시 전공명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적용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본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학위논문과정자 및 논문대체전문학술지과정자에 한해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학위 및 입학정원 <전면개정 2022.11.16., 개정 2023.12.8>

대학원명	전공명	학위종별	입학정원
미래융합공학대학원	기계IT융합공학	공학석사	80
	도시건축공학		
경영대학원	마케팅 MBA	경영학석사	108
	Finance/Accounting MBA		
	IT MBA		
	광고미디어 MBA		
	글로벌 MBA		
휴먼서비스대학원	아동가족	문학석사	147
	상담및임상심리	심리학석사	
	경찰법무	경찰법학석사	
부동산대학원	부동산	부동산학석사	42
교육정보대학원	교육공학	교육학석사	45
디자인대학원	디자인	디자인학석사	18
계			440

[별지 제1-1호 서식] 학위기(논문과정, 학술지과정) <개정 2013.10.16, 2016.12.20, 2020.04.23>

석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 ○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교 ○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학위번호 : 한양사이버대○○○○(석)○○○
학위 및 전공 : ○○○석사(○○○○전공)

대학원장(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양사이버대학교 총장(학위) ○ ○ ○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학위기(학점과정) <개정 2013.10.16, 2016.12.20, 2020.04.23>

석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 ○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교 ○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학위번호 : 한양사이버대○○○○○(석)○○○

학위 및 전공 : ○○○석사(○○○○○전공)

대학원장(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양사이버대학교 총장(학위) ○ ○ ○ (인)

[별지 제2호 서식] 수료증서

석 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한양사이버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 ○ ○ 전공)
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장 (학 위) ○ ○ ○ (인)

한양사이버대학교 총장 (학 위) ○ ○ ○ (인)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실적증명서

제 호

증 명 서

○ ○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한양사이버대학교 ○ ○ 대학원 ○○○전공에서 1년간
소정의 과정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장 ○ ○ ○ (인)